

2019년도 제13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시 : 2019. 7. 29.(월요일), 16:00
- 장 소 :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
-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
 - 심의위원 : 강상욱(분과위원장 대행), 백대용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1.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

2. 전차(제2019-122회)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

3. 안건상정 분과위원장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보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·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4. 폐회선언 분과위원장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1. 의결안건

- 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,299건(안전번호 제2019-79545호~81458호)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,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 권고하기로 의결함

Ⅲ. 회의 의사록

1. 개회선언

-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 :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31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

2. 전차(제2019-122회)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

-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 :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
- A 위원 :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모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
- B 위원 : 의견에 동의함
-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 :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전차 회의록은 그대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

3. 안전상정

- 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- 성원영 전문위원 :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2019-79545호~81458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4,299건임

(민원인의 신고 내용을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19-79545호는 네이버 이용자가 블로그에서 '☆☆☆☆☆' 영화 전체(1시간 21분 5초)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 중인 사안임

(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)심의대상 게시물의 현재 재생횟수는 3,427회이고, 우리말 자막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

참고로 해당 블로그에는 해외 영화,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게시물이 2,000건 넘게 있고, 게시자는 파워링크 광고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임

-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 :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-7954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

- B 위원 :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며, 심의대상 게시물은 네이버 이용자가 해외 영화 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

- A 위원 : 같은 의견임

-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 :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-7954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

- 성원영 전문위원 : 안건번호 제2019-79546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, 블로그 이용자가 '★★★★★ ★★★★★' 파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사안임

참고로 해당 블로그 내 다른 게시물에 대하여 제1분과위원회(2019. 7. 25. 개최, 제2019-127회)에서 시정권고를 가결한 바 있으며, 해당 블로그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음

(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)게시자는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모바일 게임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만든 게임 프로그램 복제물(안드로이드 폰에서 설치 및 실행할 수 있는 APK파일) 등을 제공하고 있음

게시자는 광고 수익을 얻고 있으며, 후원계좌도 공개하고 있음

- B 위원 : 광고 수익과 후원계좌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(심의대상 게시물의 광고, 후원계좌 부분을 제시하면서)심의대상 게시물 하단에는 “압축파일 비번은 하단 광고를 보면 풀립니다”라고 기재하고 있고, 후원계좌를 공개하고 있음
- B 위원 : 충분히 설명되었음
- 성원영 전문위원 : (해당 블로그의 다른 게시물들을 보여주면서)블로그 이름이 ‘○○○○○ ○○○○’인데, 게임프로그램의 복제물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개설한 것으로 보임
해당 블로그에는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방식으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시물이 많이 있음
- A 위원 : 게임물 권리자들이 고발조치를 해야 할 수준으로 보임
- 성원영 전문위원 : 참고로 제1분과위원회(2019. 7. 25. 개최, 제2019-127

회)에서 심의한 게시물에는 '블로그 주인장이 실수로 국내 게임을 올리게 되면 알려달라'고 되어있었음

게시자는 국내 게임물은 가급적 올리지 않고 상대적으로 권리자의 관리가 약한 해외 모바일게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

-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 :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-7954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
- A 위원 : 전문위원 검토의견 대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
- B 위원 :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하며,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
-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 :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-7954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(불법복제물 제공화면, 파일 다운로드 화면,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19-79547호~81458호는 모두 단순 복제한 음악, 프로그램, 게임, 만화, 출판, 영상물 등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
- A 위원 : 최근 모바일웹하드 불법복제물에 대한 심의요청이 많은 것으로 보임

- 성원영 전문위원 : 보호원에서 6월부터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
 - B 위원 : 현재 상영 중인 영화 ‘스파이더맨: 파 프롬 홈’, ‘알라딘’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, 캠버전인지 질의함
 - 성원영 전문위원 : (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)화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서는 캠버전일 가능성이 큼
영화 ‘알라딘’ 복제물의 경우 대부분 재생화면에 “▲▲▲▲▲▲▲▲▲▲” 마크가 삽입이 되어있음
(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 접속차단 화면을 제시하면서)해당 사이트는 사행성 사이트로 보이고,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서 접속을 차단한 상태임
 - B 위원 :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, 모두 테드카피하여 전송한 사안들이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
 - A 위원 : 같은 생각임
 -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 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-79547호~8145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,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
- (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)

“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-79545호~81458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,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”

4. 폐회 선언

-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13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

2019년 제13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8. 5.

분과위원장 대행 강상욱

위원 백대용